

월간
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7년 11월호



목 차

1. 시행령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나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





1. 시행령
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 나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. 시행령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2017/10/17개정·2017/10/19시행¹⁾)

1) 목적

-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 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(법률 14827호, 2017. 4. 18. 공포, 10. 19. 시행)됨
- 투자매매업자 등이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,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투자매매업자 등의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의무 부과(68조 5항 2호의2 및 109조 3항 1호의2 신설)
 - 70세 이상 고령자와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함
 - 신탁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등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함
-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(379조 1항 및 별표 19의2 신설)
 -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·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
 -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법제처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, 금융위원회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됨
 1) 다만, 68조 5항 2호의2 및 109조 3항 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379조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379조에 따름



□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·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(별표 22)

- 과태료 부과한도가 5천만원 등에서 1억원 등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 변경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고,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

〈과태료와 과징금〉

-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·징수되는 금전을 의미하며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임
-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여 불이익을 발생시키려는 제도임
- 과태료와 과징금은 모두 행정법상 의무 위반시에 부과되는 것이지만 과태료는 특별히 경제적 이익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도 부과하는 반면 과징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임

나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2017/10/17개정·2017/10/19시행)

1) 목적

-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퇴임 또는 퇴직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기 위함
 -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14818호, 2017. 4. 18. 공포, 10. 19. 시행)됨

2) 주요 내용

-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의 금융감독원장 위탁(30조 1항 11호의2 신설)
 -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맞추어 퇴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조치내용 결정 및 통보권한 중 문책경고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통보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



□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(별표 2)

- 과태료 부과한도가 5천만원 등에서 1억원 등으로 상향됨에 따라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,000만원에서 1,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
-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2017/10/19개정·시행¹⁾²⁾)

1) 목적

-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한 부과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
- 과태료 산정시 고려하는 위반동기 및 위반결과를 세분화·구체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한편,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제재제도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관·신분제재의 가중·감경순서 보완(25조의2 신설)
 - 기존 규정상 기관·신분제재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각각 여럿인 경우 이를 반영하는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, 기관·신분제재의 각 가중사유와 감경수준의 합을 조정 전 제재수준에 가감하도록 순서를 명확히 함

〈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〉

-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에 의해 취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있음
 - (기관에 대한 제재) ① 영업의 인가·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, 영업·업무의 전부 정지, ② 영업·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, ③ 영업점의 폐쇄,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, ④ 위법·부당행위 중지, ⑤ 계약이전의 결정,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, ⑦ 기관경고, ⑧ 기관주의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(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,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름

2)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



- (임원에 대한 제재) ① 해임권고(해임요구, 개선(改選)요구를 포함),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(6개월 이내), ③ 문책경고, ④ 주의적 경고, ⑤ 주의
- (직원에 대한 제재) ① 해임권고(면직), ② 직무정지(정직), ③ 문책경고(감봉), ④ 주의적 경고(견책), ⑤ 주의

-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(5조, 16조 1항, 22조, 31조 및 32조, 46조(일부) 삭제)
 - 기존 규정상 위법이 아닌 금융기관의 공신력 훼손, 사회적 물의 야기, 감독자로서 감독 태만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에 해당하거나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시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 규정 등 이미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사항들을 삭제함

-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(별표 2)
 - 과징금 부과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함
 - 부과기준 산정시 고려되는 세부 참작사항과 중복되는 과징금의 가중·감경사유를 삭제하며, 과징금 부과시 위반자의 재무상태나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감액·면제사유를 보완함

-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(별표 3 및 별표 6 신설)
 - 과태료 부과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종전 고의·과실에 서 위반행위의 목적·동기 및 경위 등도 고려하도록 함
 - 위반동기의 판단요소와 중복되는 과태료의 가중·감경사유를 삭제하며, 금융거래자 피해 배상에 따른 감경사유를 신설하는 한편, 과태료 건별부과의 적용 원칙을 명시하고 업권별로 적용되는 건별부과의 세부기준을 신설함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(2017/10/27개정·2018/1/1시행)

1) 목적

- 상장지수펀드증권 신규 유동성공급자의 용이한 진입을 위해 유동성공급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, 주식워런트증권 연부과금 징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 진입요건 개선(별표 2의3 2호다목3)가 개정
 - 지정참가회사(AP)로서 1년 이상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설정·환매 업무경험이 있어야 유동성공급회원(LP)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삭제
- 주식워런트증권 연부과금 징수기준 개선(별표 10 2호마목 신설 등)
 - 직전년도 말 상장종목수에 대해 징수하는 기준을 직전년도 중 종목당 상장기간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기준으로 변경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(2017/10/19개정·2017/11/1시행)

1) 목적

- 주식 과당매매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 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표준안 마련 필요
 - '17. 6월 31개 증권사 점검 결과, 과당매매의 주요 지표인 매매회전율이 100%~2,000%로 다양하며, 회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도 7사

2) 주요 내용

- 매매회전율, 손실금액, 수수료 3가지 항목을 기초로 과당매매 모니터링 기준 설정

 - 평균 예탁자산 대비 매매회전율이 400%를 초과하는 계좌
 - 평균 예탁자산 대비 손실금액의 비중이 20%를 초과하는 계좌
 - 평균 예탁자산 대비 수수료의 비중이 4%를 초과하는 계좌

 - 매매회전율 및 손실금액 비중은 단독 또는 양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음

- 과당매매 점검 대상으로 연속(3회 이상) 선정된 계좌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본사 준법감시부 등에서 매매내역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